

[2024년 12월 1일 총회에서 결의/인준]

워싱턴 문인회 회칙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명칭

본회는 워싱턴문인회라 칭한다. 영문으로는 The Korean Literary Society of Washington 이라 표기한다. (이하 본회라 칭한다)

제 2 조 소재지 및 관할지역

- 1 항: 본회는 워싱턴지역에 본부를 두고(회장 주소지) 필요에 따라 회원지역에 지부를 둘 수도 있다.
- 2 항: 본회 회원은 워싱턴 D.C.를 중심으로 한 VA, MD 지역 거주 문인을 회원으로 하되 타지역 거주 희망자도 본회 의무 조항을 준수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. (제 3 장 5 조 참조)

제 2 장 목적 및 사업

제 3 조 목적

본회는 다음의 1, 2, 3, 4 항을 목적으로 한다.

- 1 항: 창작활동을 통하여 모국어와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며 조국애를 간직하고 아울러 동포사회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한다.
- 2 항: 회원의 권익과 상호 친목을 도모한다.
- 3 항: 수도권을 비롯한 미주지역에 한국문학을 소개, 복합문화정책에 이바지한다.
- 4 항: 차세대를 위해 우리의 전통문학과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문화 및 문학 장르를 개척한다

제 4 조 사업

- 1 항: 문학의 창작, 연구발표회, 토론, 강연회, 문학 강좌개최.
- 2 항: 신춘문예 현상공모, 백일장 및 문단에의 작품 추천.
- 3 항: 기관지, 합작지 발행 등 출판사업.
- 4 항: 국내외 작가 및 다문화, 문화단체와 교류
- 5 항: 회원의 권익옹호,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.

제 3 장 회원

제 5 조 회원의 자격

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된다.

- 1 항: 본회에서 실시하는 <워싱턴문학> 신인문학상 공모에 입상(당선, 우수작, 가작, 장려상)한 자. 워싱턴문인회 회원은 신인문학상에 응모할 수 없다.
- 2 항: 문단에 이미 등단한 자.
- 3 항: 타 문학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. 단 2 항과 3 항의 경우 해당 장르에 작품(시, 시조, 동시 3편, 수필 2편 소설 1편)을 제출하여 본회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영입을 결정한다.

4 항: 본회 이외의 문학회나 관련기관을 통하여 본 문학회와 다른 문학 장르로 등단하여 심의를 통과한 회원은 복수 장르의 문학활동을 할 수 있다. 그 외 회원이 복수 문학 활동하기를 원하는 경우, 회장과 심의위원장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회원이 원하는 타 문학회에 해당하는 작품(시, 시조, 동시 3 편, 수필 2 편, 소설 1 편)을 제출해야 한다. 심의위원회는 이에 관한 적부심사를 거쳐 확정된 후에 지원자에게 통보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. 2023 년 3 월 18 일 이전에 이미 하나 이상의 문학회에 참여한 회원은 이 절차를 면제한다.

제 6 조 고문, 자문, 명예 회원

본회는 다음의 경우 본회의(제 14 조 참조 이하 동일) 결의에 따라 고문, 자문, 명예 회원을 둘 수 있다.

- 1 항: 고문-전직회장
- 2 항: 자문-사계, 학계의 권위자로 본회 발전에 기여하며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자.
- 3 항: 명예 회원-본회의 목적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이나 기관, 또는 단체.

제 7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

- 1 항: 의무-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하며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회칙을 준수한다.
- 2 항: 권리
 1. 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, 제반 의결권을 갖는다.
 2. 회원은 본회의 목적(제 3 조 전항)과 사업에 참여하며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.
 3. 회원은 본회의 회원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 8 조 회원의 자격상실

본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의 규정 혹은 결의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- 1 항: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.
- 2 항: 매년 6 월 말 이전까지 회비 미납 또는 1 년 이상 연락이 불가할 때.
- 3 항: 본인이 탈퇴를 원했을 때.

제 4 장 조직 및 기구

제 9 조 조직

본회는 본회의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의 집행부를 둔다.

- 1 항: 집행부-부회장(3 명 이내), 총무, 재무, 홍보, 봉사, 음악, 미술, 서기로 구성하되 별정직으로 감사와 규정관리위원장과 심의위원장을 둔다. (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위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.)
- 2 항: 임명권-위 1 항의 각 부서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 (단 부회장과 감사 및 규정관리위원장과 심의위원장은 3 항 참조)
- 3 항: 인준-부회장(3 명 이내), 감사, 규정관리위원장과 심의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, 또는 위원 회의에서 인준한다. 면책을 요할 시 역시 총회 또는 회원회의 결의로 행한다.

4 항: 본회는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. 이사회는 회원 자격을 갖춘 전직 회장으로 구성된다.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된다.”

제 10 조 직무

- 1 항: 회장-회장은 대내외에서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회원 회의를 관장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.
- 2 항: 부회장-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3 항: 총무는 본회의 일반업무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수행한다.
- 4 항: 재무-재무는 본회의 재정 사항을 전반을 관리, 기록하며 회비 징수업무를 관장한다.
- 5 항: 홍보-홍보부장은 본회의 사업과 관련된 홍보업무 일체를 관장, 집행한다.
- 6 항: 봉사부장-봉사부장은 본회의 사업 및 행사에서 봉사에 관한 사항 일체를 관장한다.
- 7 항: 음악부장-음악부장은 본회의 사업 및 행사에서 음악에 관한 사항 일체를 관장한다.
- 8 항: 미술부장-미술부장은 본회의 사업 및 행사에서 미술에 관한 사항 일체를 관장한다.
- 9 항: 서기-서기는 본회의 제반업무, 활동, 회의록 등을 작성 보관한다.
- 10 항: 창작특위-제 4 장 12 조 2 항의 취지와 목적에 따른 사업 일체를 기획 추진한다.
- 11 항: 감사-연 1 회 회계 및 재무 사항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 또는 회원회의에 보고한다. (이때 회장단은 감사자료 요구에 협조한다.)
- 12 항: 규정관리위원장-회칙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관장하며 회장 또는 회원들의 회칙개정 건의가 있을 때 축조심의를 거쳐 총회 상정안을 작성한다.
- 13 항: 심의위원장-심의위원장은 본 회칙 5 조 2 항, 3 항 및 4 항에 준한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과 해당 문학회장과 회원을 포함한 5 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. (단,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, 기타 문학 활동 중 일어나는 제반 문제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.)

제 11 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

- 1 항: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 방법은 무기명투표로,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.
- 2 항: 회장의 임기는 2 년으로 1 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.
- 3 항: 집행부 각부서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회장의 임기와 같이한다. (단, 회장의 면책이나 본회의에서 면책을 결의할 수 있다.)

제 12 조 장르별 문학회

본회는 다음과 같은 장르별 문학회를 둔다.

- 1 항: 각 장르별 문학회
 1. 시문학회 2. 시조문학회 3. 수필문학회 4. 소설문학회 5. 기독교문학회
 6. 평론문학회 7. 희곡문학회 8. 아동문학회 9. 외국문학회
- 2 항: 창작지원기금 및 문화사업기금 모금추진 특별위원회
(제 2 장 3 조 4 항의 지원사업과 한국문학 전공 1.5 세 및 2 세들의 창작지원사업.)

제 5 장 회의

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회원회의, 임원 회의로 구분한다.

제 13 조 총회

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.

- 1 항: 정기총회는 매년 회기 말 12월 중에 소집한다. (단 필요한 경우 11월에 할 수도 있으나 이듬해 1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)
- 2 항: 1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2. 임원진, 또는 회원 다수 회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회장이 거부할 때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연대 서명으로 임시총회를 열 수 있으며 이때 회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.
- 3 항: 총회소집은 총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통보 및 공고해야 한다.

제 14 조 회원회의 및 임원회의

- 1 항: 회원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재적 회원 10명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- 2 항: 이때 의장은 회장이 되며 사안에 따라 회장의 위촉, 또는 회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 중에서 의장을 세울 수 있다.
- 3 항: 임원회는 회장 및 집행부의 재량에 위임한다.

제 15 조 의결

모든 회의의 의결은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
(이때 서면 및 구두 위임회원은 참석회원으로 간주하되 구두로 위임한 회원은 서면 보완을 해야 한다)

제 6 장 선거

제 16 조 회장 선거

- 1 항: 피선거권-선거 당일로부터 소급 2년 이상 본회 회의에 출석하고 회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한 자로서 인품과 덕망을 인정받은 자
- 2 항: 선거관리위원
(1) 선거관리위원은 3명으로 회장이 위촉하고, 총회 당일 인준을 받는다.
(2) 선거관리위원은 투, 개표 및 제반 선거 진행업무를 관리, 감독한다.
(3) 적법 당선자 선포를 한다. (당선자 선포 후 자동 해체된다)
- 3 항: 2명 이상의 후보가 경선,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,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. 역시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3차 투표를 실시하며 후보의 소신 발표 시간을 갖는다.

제 7 장 재정

제 17 조 재정

본회의 재정은 회원회비, 찬조금, 행사수익금, 기타수입으로 한다.

제 18 조 회원회비

- 1 항: 회원회비는 연 120 불로 하며 매년 6월 말 이전에 재무에게 납부한다.
- 2 항: 신입회원 가입비는 150 불로 하며 입회와 동시에 재무에게 납부한다. 단, 워싱턴문학 신인문학상 공모를 통해 등단한 회원 가입자에게는 신입회원 가입비를 면제한다.

3 항: 회비는 총회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제 19 조 회계연도

본회의 회계연도는 회장의 임기에 준하며 피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 20 조 회칙개정

본회의 회칙개정은 정기 또는 임시총회에서 할 수 있다.

제 21 조 회장단 교체 및 인수인계

본회의 회장단 교체 및 인수인계는 총회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해 2월 15일까지 45일 이내에 하며 본회의 재정, 제반 서류, 지속 사업 이월, 본회와 관련된 집기 일체를 대상으로 한다.

부칙

1 항: 본 회칙에 규정이 안 된 사안은 일반관례에 준한다

2 항: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(이때, 통과된 본 회칙을 제 0 차 개정안이라고 표기하고 본 회칙만을 사용한다)

(부록) (외칙)

제 1 차 개정안: 1998 년 12 월 20 일 통과 및 시행

제 2 차 개정안: 1998 년 9 월 19 일 통과 및 시행

제 3 차 개정안: (가) 1 차 축조심의; 1999 년 10 월 17 일

(나) 2 차 축조심의: 1999 년 11 월 13 일

제 4 차 개정안: 2011 년 12 월 11 일 통과 및 시행

제 5 차 개정안: 2019 년 12 월 14 일 심의부 통과 및 시행

제 6 차 개정안: (가) 2022 년 6 월 11 일- 이문형, 황보 한, 이정자, 김 레지나, 이현원
회칙 개정위원으로 위촉

(나) 6 월 21 일~6 월 29 일- 회칙 전 조항의 검토작업.

(다) 6 월 29 일~7 월 9 일- 각 위원님들의 회칙개정 초안 공유(Email 상)

(라) 7 월 9 일 오후 4 시~ 7 시 40 분 이문형, 황보 한, 이정자, 김 레지나
위원 회합. 회칙개정안 축조심의.

(마) 이문형, 김 레지나 위원, 입안된 조항들 작성, 정리. 위원님들의 확인
완료.

(바) 8 월 8 일 오후 6 시-영상회의(Zoom) 후 본 회칙개정안을 본회에 상정키로
의결.

(사) 2022 년 11 월 12 일 총회에서 개정안 통과 (오타 등 수정본 12 월 11 일
회의에서 최종 확인 인준

제 7 차 개정안: 2023 년 3 월 18 일 회칙개정위원(황보 한 위원장, 이재훈, 임정현 위원)
회칙개정안 본회에 상정; 개정안 통과

제 8 차 개정안: 2024 년 12 월 1 일 회칙개정위원(황보 한 위원장, 이재훈, 서윤석 위원)
회칙개정안 본회에 상정; 약간 수정한 개정안 통과